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6. 20 선고 2019가단4203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1. B 주식회사

2. C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9. 6. 2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,850,268,247원 및 그중 313,942,786원에 대하여 2015. 10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: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)

판사김홍도

별지